

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



# 보건복지부



수신 내부결재  
(경유)

## 제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일부개정고시 발령
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따라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 (고시 제 2020-271호(2020. 11. 30.))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고자 합니다.

○ 변경 7항목

○ 시행일: 2021년 1월 1일

- 붙임 1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1부.
- 2. 고시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. 끝.

|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|---|
| 주무관  | 서희선          | 행정사무관                       | 박영운          | 보험약제과장   | 전결 2020. 12. 24.<br>양윤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협조자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|   |
| 시행   | 보험약제과-4334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접수   |   |
| 우    | 30113        |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|              |  | / <a href="http://www.mohw.go.kr">http://www.mohw.go.kr</a> |
| 전화번호 | 044-202-2754 | 팩스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| 044-202-3935 | / <a href="mailto:huisseonseo@korea.kr">huisseonseo@korea.kr</a> | / 비공개(5)  |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